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교원 인사 규정 제17조 및 제21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승진 최소소요연수 산정) ① 신규임용교원의 전직대학교 동일직위 인정 경력 기간은 교원인사규정 제16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직급별 승진 최소소요연수에 산입된다. 단, 신규임용교원이 최초로 승진심사를 받기 위한 본 대학교에서의 최소재직년수는 2년 6개월로 한다.

② 전향의 전직대학교 동일직위 인정 경력 기간은 <별표1>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된 기간은 승진 최소소요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무 중 부상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
2.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나 기각된 경우 직위해제 기간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직위해제 기간
4. 정관 제44조 제1항 제7호 및 제7의2호 규정에 의해 휴직할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제3조 (승진신청) ① 총장은 해당학기의 최종일을 기준으로 최소 승진소요연수를 충족한 교원에게 그 학기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진심사 신청/포기서(별표2)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승진심사) ① 제3조 제2항에 의한 승진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교원에 대하여 승진심사 평정을 실시한다.

② 승진심사 평정자 구성은 총장, 교학부총장(이하 “부총장”이라 한다),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소속 대학(원)장 및 위촉 평정위원(이하 위촉위원) 1인으로 하며, 교원 인사 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승진요건 충족 여부를 <별표3>의 승진심사 평정표로 평정한다. 단, 승진심사 평정자가 승진심사 대상자일 경우 평정자 구성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2.27., 2019.9.10., 2021.8.26.)

③ 전향의 위촉위원은 교수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19.2.27.)(개정 2026. 7. 1.)

제4조2 (승진심의 및 이의신청)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 평정 결과를 근거로 교원 인사 규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의하여 교원에 대한 승진 제청 여부를 심의한다.

② 승진심의 결과 승진 제청 거부된 교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승진 제청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한다.

③ 전향의 이의신청에 대해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신설 2023.9.25.)

제5조 (재임용 심의 신청) ① 총장은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향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재임용심사) ① 제5조 제2항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 평정을 실시한다.

② 재임용심사 평정자 구성은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미래인재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소속 대학(원)장 및 위촉 평정위원(이하 위촉위원) 2인 이내로 하며, 교원 인사 규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재임용 요건에 대하여 <별표4>의 재임용심사 평정표로 평정한다. 단, 재임용심사 평정자가 재임용심사 대상자일 경우 평

정자 구성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2.27., 2021.8.26., 2021.11.15.)

③ 제2항의 위촉위원 중 1인은 교수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19.2.27., 2021.11.15., 2026. 7. 1.)

④ 제2항의 위촉위원 중 1인은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1.11.15.)

제7조 (재임용 심의)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 평정 결과를 근거로 교원 인사 규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의하여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의 과정 중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재임용 통지) ①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을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임용권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임용기간의 산정) ① 재임용기간 중에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일을 기준으로 다시 임용기간을 정한다.

②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③ 정부 또는 본교와 관련한 공무로 국외파견·출장·휴직 중인 교원이 그 기간 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 휴직 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휴직기간의 임용기간 산입 여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2019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조의2 개정사항은 2024년 3월 1일 승진임용 대상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적대학교 동일직위 경력 인정 기준(개정 2023.9.25.)

전적대학교 동일직위 경력 인정 기준

구 분		인정비율 (%)	비고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	100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50	
사이버대학	정년트랙 전임교원	50	
전문대학	정년트랙 전임교원	50	
비전임교원		0	미인정

※ 신규임용 시 전적대학교 동일 직위 경력 인정은 최대 직급별 승진 최소소요연수의 2분의 1에 한함(조교수 임용시 3년, 부교수 임용시 2년 6개월) (개정 2023.9.25.)

※ 박사학위 취득 후 전임교원으로 재직한 경력만 인정

※ 외국대학 및 대학원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비율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사이버대학 및 전문대학의 근무 경력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근무 경력만 인정

교원 승진심사 평정표

평 정 대상자	소 속	(단과대학, 학과)
	직 위	
	성 명	

[심사평정 방법 및 기준]

1.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의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아래 5등급 중 하나로 평정한다.

등 급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
평 점	5	4	3	2	1

2. 평정자 6인의 합산 평점 평균이 3.5 미만인 자, 평가영역별 평가등급에 “D” 이하 등급이 5개 이상 부여된 자, 종합의견에 3인 이상이 “부”로 평정한 자는 승진임용 제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3. 작성된 심사평정표는 ‘인사비밀’사항으로 밀봉하여 교무지원팀에 제출한다.

평가영역	평 가 항 목	평 가 등 급
1. 연구업적	가. 연구업적 및 연구비 수주 실적 나. 학문연구 발전을 위한 역량 다. 국내·외 학술활동(학회 등)	
2. 교육	가. 교육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 나. 교육효과(강의평가 등)	
3. 학생지도 및 봉사	가. 학생 지도 및 소통 노력 나. 교내·외 행사 참여 및 학생 지도 실적 다. 교내·외 활동을 통한 학교 발전 기여도	
4. 법령준수 및 근무성실성	가. 교육윤리 및 연구윤리 준수 나. 대학행정 협력 및 제 규정 준수 다. 상벌 상황(포상 및 징계 등) 라. 대학발전을 위한 노력 및 참여	

종합의견	(해당 교원의 승진에 대한 종합의견 기재)	가 / 부
------	-------------------------	-------

평 정 자	(직위)	(인)
-------	------	-----

교원 재임용심사 평정표

직 위:	대학(원)	학과(전공)	평가위원	(인)		
	성명:		평가일시	년	월	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점기준					항목별 점수	평가 등급
1. 교수로서 기본적 자질 및 법령준수	가. 교원 4대비위 위반(징계이력) 및 연구윤리 준수 (교원업적 평정자료 기사사항, 연구진실성위원회 관련자료 등)	A	B	C	D	E		
		교원 4대비위*에 해당되어 중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 D 이하 평정 원칙 교원 4대비위 외의 건에 대해 중징계 이상 처벌을 받았을 경우 C 이하 평정 원칙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C 이하 평정 원칙						
2. 학교발전에 대한 기여 및 근무성실성	가. 상벌상황(포상 및 징계 등) (평정자료 내 기사사항 및 상벌현황, 업적평가결과 훈.포상 및 수상, 민원자료 등)	A	B	C	D	E		
	나. 대학발전을 위한 노력 참여 (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수업 등 공식석상에서 교육자로서 본분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경징계 이하 징계를 받은 경우 B 이하 평정 원칙						
		A	B	C	D	E		
		교원업적평가 교내봉사에 참여한 실적이 있을 경우 C 이상 평정 원칙, 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계열별 상위 20%이내 A, 상위 40% 이내 B. (평가대상년도평균)						
3.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가. 연구업적 실적 (교원업적평가 연구영역)	A	B	C	D	E		
	나. 학문연구 발전을 위한 역량 (교원업적평가 연구영역)	교원업적평가 재임용에 요구되는 연구실적 충족시 C 이상 평정 원칙, 교원업적평가 연구영역 계열별 상위 20%이내 A, 상위 40% 이내 B (평가대상년도평균)						
		A	B	C	D	E		
		교외연구비 수혜실적이 있는 경우 B 이상 평정 원칙						
4. 교수 (강의)능력 과 실적	다. 국내·외 학술활동(학회 등) (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A	B	C	D	E		
	교원업적평가 교외봉사항목 실적이 있는 경우 B 이상 평정 원칙							
	가. 교수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 (교원업적평가 교육영역)	A	B	C	D	E		
		강의개선노력(교수지원프로그램 참여)시 B 이상 평정 원칙						
나. 학사 관련 일정 및 규정 준수 (교원업적평가 교육영역)		A	B	C	D	E		
	교원업적평가표 교원업적평가점수(교육)가 계열별 평균점수이상인 경우 B 이상 평정 원칙 (평가대상년도평균)							
	다. 교육효과(강의평가) (교원업적평가 교육영역)	A	B	C	D	E		
강의평가결과가 강의평가평점 26.6이상 (평가대상학기평균)경우 최소 C 이상 평정 원칙(강의평가평점 31.5이상 A, 상위 28 이상 B)								
5. 학생지도 능력과 실적	가. 학생상담 (교원업적평가 교육영역)	A	B	C	D	E		
	나. 학생지도 및 소통노력 (교원업적평가 교육영역)	학생상담 실적(평가대상년도 평균)이 12점(20점 만점)이상이면 C 이상 평정 원칙						
		A	B	C	D	E		
		교원업적평가 교육영역 학생지도 항목 중 석박사배출현황 또는 졸업생취업을 항목 점수가 있을 경우 B 이상 평정 원칙						

[심사평정 방법 및 기준]

1.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자료 및 교원업적 평가표에 근거하여 평정한다.(평가대상기간)
2. 평가(평점)는 각각 A(5), B(4), C(3), D(2), E(1)으로 평정한다.
3. 전체 평정자의 합산 평정 평균이 3.0 미만이거나, 항목별등급 집계 결과 'D' 이하 등급이 5개 이상일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평정한다.
4. 1번 영역의 경우 교원 4대비위 및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A(5)로 평정한다.
5. 3번 영역 가. 항목의 연구업적실적 미달 시 3번 영역 전체를 평정하지 않으며, 연구업적실적 미충족으로 재임용에서 자동 탈락한다. 단,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6. 4번 영역 가. 항목의 경우 의무참여실적은 제외한다.
7. 평가등급은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균하고 소숫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8. 평가등급 'E' 를 부여할 경우 평가위원 의견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9. 재임용평정심사시 1번 영역에 대한 심의가 진행중인 경우 조건부 평정이 가능하다.

교원 4대비위: ①금품 · 향응수수 · 청탁금지 ②학생 상습폭행 · 처벌 ③성추행 · 성폭행 ④성적조작

※ 평가위원 의견(별지 기재 가능)